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1월 20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7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33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7년 12월 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체육과장 이정의)

가. 제안이유

- 법제처에서 통보한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정비대상 조례로 상위 법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와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에 관한 기준을 일부개정 함. [별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사업자에게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용호)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법제처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통보되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석유 가스 충전사업	자격 기준	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대상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하되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설 기준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1)배치기준 중 다), 라), 마)에서 정하는 기준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 가스의 판매사업 · 충전 사업자 영업소	자격 기준	1. 대표자(법인일 경우 임원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는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험물 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그 설치를 제한한다. 2. 사업소 부지는 폭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지역이어야 한다. (단, 도로는 지적도상 도로이면서 현재 이용되어야 함.) 3. 사업소 부지 안에는 가스사업을 위한 시설이외의 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신규허가 사업소 간 안전거리는 사업소부지 경계간 직선거리 1,0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업소간의 거리란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영업소 등 대지경계선과의 거리를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보호시설로부터 반경 50m이내에는 신규허가에 따른 용기보관실을 설치할 수 없다.
	시설 기준	1. 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 및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 용기보관실 : 38㎡이상 ○ 사 무 실 : 18㎡이상 ○ 주 차 장 : 23㎡이상